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1.

국토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4년 9월 23일, 손명수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 2024년 9월 24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0차 국토교통위원회(2024. 11. 13.)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원회부

제3차 교통법안심사소위(2024. 12. 3.)

상정·축조심사·의결(수정가결)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2024. 12. 23.)

상정·소위심사보고·찬반토론·의결(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국회의원 손명수)

현행법은 공항시설 등을 관리·운영하는 자가 해당 시설의 사용자와 이용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용료 체납에 대한 금전적 제재처분인 가산금과 연체금의 경우 침익적 행위로서 그 근거는 법률에 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법적 근거 없이 이를 징수하고 있어 법치행정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연체금 부과근거 및 기준을 신설하여 연체금 부과근거를 명확히 하되, 그 기준을 1일을 단위로 가산하는 일할 계산 방식으로 하고 부과 상한은 최대 50%를 넘지 않도록 하여 합리적인 연체금 부과 기준을 설정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5항 신설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박현준)

1. 공항시설사용료 연체금 징수 근거 마련(안 제32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가. 개정안의 내용

개정안은 공항시설 사용료 등의 체납 시 체납기간에 대하여 일단위로 연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되, 그 상한을 체납된 사용료의 50%로 규정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체납된 사용료 및 연체금을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안 부칙은 개정법률 시행 당시 체납된 사용료 및 연체금에 대해서도 연체금 징수 및 강제징수 근거를 적용하도록 적용례를 규정하고 있음.

현행	개정안
제32조(사용료의 징수 등) ① ~ ④ (생략) <u><신설></u>	제32조(사용료의 징수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u>⑤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하면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u>

현행	개정안
<신설>	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체납된 사용료에 체납일수 1일당 10만분의 22를 적용하여 산출한 연체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연체금의 한도는 체납된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고, 그 지정된 기간에 사용료 및 제5항에 따른 연체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제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제2조(사용료의 징수 등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체납된 사용료 및 연체금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나. 검토의견

1) 개정안의 취지

현행 「공항시설법」 제32조¹⁾는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을 관리·

1) 「공항시설법」

제32조(사용료의 징수 등) ①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항·비행장·항행안전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

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공항·비행장·항행안전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공항시설 등의 사용료(이하 “공항시설사용료”라 한다)를 징수하고 있는 주체는 인천국제공항공사 및 한국공항공사임²⁾.

【 공항 및 비행장 관리·운영주체 】

공항 및 비행장	관리운영주체
인천공항	인천공항공사
김포·제주·무안·양양공항	한국공항공사
김해·대구·청주공항	
울산·여수	
광주·포항경주·사천·군산·원주공항	
울진 비행장	
기타 비행장	민간(사설), 군

자료 : 국토교통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는 최근 다음과 같이 공항시설사용료를 징수하였음.

를 징수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받으려는 자는 사용료의 금액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제외한 자가 사용료를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 2)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일부 비행장의 경우 민간이 관리운영주체이기는 하나, 대한항공(정석비행장, 한서대학교(태안비행장)에 문의한 결과 공항시설료는 따로 징수하지 않고 교육비 및 기숙사비만 받고 있다는 설명임.

【 최근 한국공항공사 공항시설사용료 징수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착륙료	67,830	28,187	27,716	32,439	52,283
정류료	4,046	899	284	295	3,068
조명료	11,569	7,602	8,487	8,776	10,861
계류장사용료	2,330	822	539	582	2,523
탑승교사용료	9,091	5,261	5,484	6,118	8,607
수하물처리 시설사용료	7,415	2,849	3,089	3,869	6,263
여객공항이용료 (국내+국제)	232,612	102,227	117,175	138,142	189,129
기타 시설사용료	104,043	71,636	82,100	91,947	106,907
합 계	438,936	219,483	244,874	282,168	379,641

【 최근 인천국제공항공사 공항시설사용료 징수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착륙료	306,313	140,344	146,629	186,777	268,332
정류료	28,111	2,610	199	14,643	30,718
탑승교사용료	19,685	5,995	5,064	6,783	15,495
수하물처리 시설사용료	67,334	11,102	3,075	16,697	53,166
계류장 사용료	4,619	1,069	589	716	4,352
여객공항이용료 (국내+국제)	572,476	92,100	25,587	141,307	409,309
기타 시설사용료	2,399,834	1,158,352	319,042	670,237	1,320,685
합 계	3,398,372	1,411,572	500,455	368,945	2,104,080

자료 : 국토교통부

양 공항공사는 공항시설을 이용하는 항공사에게 부과한 사용료가 체납된 경우 법적 근거 없이 내규에 근거하여 연이율이 8%, 최고한도가

원금의 40%로 설정된 연체금을 징수하고 있음.

그러나 연체금의 부과·징수는 금전납부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별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으로 보임.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2022년 1월 법률에 근거 없이 부과하는 공항시설사용료 등에 대한 연체금에 대하여 연체금 부과나 연체율은 국민에게 직접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으로 법률에 근거하여야 함에도 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나 내규로 운영하는 것은 위법성 논란이 야기될 수 있음을 지적하며, 연체금 부과 등에 관한 사항을 「행정기본법」의 ‘법치행정의 원칙’ 등에서 정한 바와 같이 법률에 규정할 것을 의결로서 권고하였음.

또한, 2022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공항시설 사용료 연체료 징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이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으로 지적된 바 있음.

이에 공항시설 사용료 연체금 징수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보임.

2) 구체적 부과기준에 대한 하위법령 위임 필요성 검토

안 제32조제5항 전단은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체납된 사용료에 체납일수 1일당 10만분의 22를 적용하여 산출한 연체금을 징수한다고 규정하여, 일단위로 1일당 10만분의 22(연 8.03%)를 징수할 수 있도록 부과기준을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구체적인 연체요율과 연체금 부과방식은 시중은행의 연체이자율의 변동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으로 위임하는 방안³⁾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이를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경우 포괄위임의 우려가 있을 수 있으므로,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⁴⁾ 등의 입법례와 같이 연체금의 최고한도, 일할 부과방식, 시중 이자율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점 등 대강의 기준을 법률에서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3) 연체금 최고한도에 대한 검토

안 제32조제5항 후단은 공항시설 사용료 연체금의 최고한도를 체납된 사용료의 50%로 규정하고 있음.

3) 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2022), p.231

4)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43조(연체금의 징수) 중앙회는 보험가입자가 납부기한까지 어선원보험료 등 이 장에 따른 징수금을 내지 아니하면 그 연체기간에 대하여 36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 이내에 은행의 연체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금을 일단위로 징수한다. 다만, 연체금이 소액이거나 그 밖에 그 징수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연체금의 상한과 관련하여 원금의 3%를 상한으로 규정한 법령이 3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이 원금의 48~55%(부과기한의 상한을 60개월로 설정)이 26.6%로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음.

〈법률상 연체금 초과금지 상한 규정 현황〉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상: 64개)

법령 상한 (비율 또는 부과기한)	대상 수	비율	대표사례
원금 2.5%	3	4.7%	중독예방치유부담금,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전기사용자부담금
원금 3%	25	39%	방송통신발전분담금,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영화입장권부과금, 하수도 사용료 등
원금 5%	8	12.6%	석면피해구제분담금, 특정물질 수입부담금, 전파사용료 등
원금 10% 6개월	1	1.5%	외환건전성부담금
60개월(원금 18.3%)	2	3.1%	석유 수입·판매부과금, 고압가스 안전관리부담금
36개월(원금 27%)	1	1.5%	장애인고용부담금
60개월 (원금 48~55%)	17	26.6%	국유재산사용료, 먹는물수질개선부담금, 재건축부담금, 국가하천사용료, 운항관리자부담금 등
60개월(원금 75%)	3	4.7%	우편요금, 농지보전부담금, 공유재산사용료
기타	4	6.3%	농업생산기반시설 무단점용료(없음), 주차요금(4배), 혼잡통행료(5만원), 상환특별기여금(금융위 위임)

자료 : 국민권위원회 「공공부과금 연체금 부담 경감방안」(2022.1.10.)

공항공사에서 징수하는 연체금 부과대상은 일반국민이 아닌 항공사 등 사업자라는 점, 연체금 한도가 지나치게 낮게 설정될 경우 항공사 등의 고의 체납이 발생하여 공사 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 매년 연말 기준 공항시설사용료 연체금 현황은 다음과 같이 적지 않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체금

최고한도인 50%는 적정한 수준으로 보임.

【 한국공항공사 공항시설사용료 연체금 현황(12.31. 기준) 】

(12.31 기준, 단위 : 백만원)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착륙료	76	768	651	447	460
정류료	130	283	513	150	242
조명료	81	195	260	213	203
계류장사용료	17	43	73	35	53
탑승교사용료	1	103	95	60	67
수하물처리 시설사용료	6	79	67	58	59
여객공항이용료 (국내+국제)	223	3,305	2,132	1,097	1,213
기타 시설사용료	5,963	7,884	7,998	8,125	8,160
합 계	6,497	12,660	11,789	10,185	10,457

* 연체가산금을 포함한 금액

【 인천국제공항공사 공항시설사용료 연체금 현황(12.31. 기준) 】

(12.31 기준, 단위 : 백만원)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착륙료	565	615	1,734	2,008	714
정류료	107	12	11	144	18
탑승교사용료	72	97	169	193	111
수하물처리 시설사용료	188	189	293	446	256
계류장 사용료	-	1	-	-	15
여객공항이용료 (국내+국제)	2,163	2,653	1,709	3,166	2,096
기타 시설사용료	3,336	23,291	23,694	25,787	20,732
합 계	6,431	26,858	27,610	31,744	25,965

* 연체가산금을 포함한 금액

자료 : 국토교통부

4) 체납 시 강제징수에 대한 검토

“체납처분”이란 금전채권의 강제적 실현을 위한 일련의 절차를 의미함을 고려할 때 연체금 징수권자에게 체납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나 이는 미비한 실정임.

이에 안 제32조제6항은 그 근거를 마련하되, 사적 주체인 양 공항공사로 하여금 체납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고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체납처분 전에 미리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할 필요⁵⁾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강제징수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 관계기관 의견

1) 국토교통부

공항시설사용료 체납 시 연체금 부과 근거(50%한도) 마련 및 고의 체납을 방지하기 위한 강제 징수의 근거 마련에는 동의함. 다만, 연체료율 변동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법령에는 연체료 부과 근거와 상한에 대해서만 명시하고 연체 기간에 따른 연체금 부과 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은 하위법령에서 정하는 것이 타당함.

5) 법제처, 법령 입안 심사 기준(2022)

“또한, 공단 등 특수법인이 징수하는 사회보험료 등에 대해서 그 성격상 불가피하게 강제징수 규정을 두는 경우에는 체납처분 전에 미리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정을 둔다.”

2) 인천국제공항공사

공항시설 사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연체금의 한도는 국회가 법률로 결정하되 「국유재산법」 제73조⁶⁾, 「국세기본법」 제47조의4⁷⁾의 입법사례와 같이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여 경제 사정에 따라 유연하게 연체이자율을 정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6) 「국유재산법」

제73조(연체료 등의 징수) ① 중앙관서의 장등은 국유재산의 사용료, 관리소홀에 따른 가산금, 대부료, 매각대금, 교환자금 및 변상금(징수를 미루거나 나누어 내는 경우 이자는 제외한다)이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체료 부과대상이 되는 연체기간은 납기일부터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7)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인지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인지세는 제외한다)의 납부(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 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초과환급받은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3.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중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100분의 3(국세를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교통법안심사소위원장 문진석)

동 개정안은 구체적인 연체요율 등에 대해서는 시중 은행의 연체이자율의 변동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등 수정가결하였음.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수정가결

8.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내용

개정안의 체계와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경미한 자구 수정 이외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음

※ 심사보고서 붙임서류 :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1부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1부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4. 12.

제 안 자 : 국토교통위원장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가. 구체적인 연체요율 등에 대해서는 시중 은행의 연체이자율의 변동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안 제32조제5항).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2조제5항 전단 중 “체납된 사용료에 체납일수 1일당 10만분의 22를 적용하여 산출한 연체금을 징수”를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의 연체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금을 일단위로 징수”로 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32조(사용료의 징수 등) ① ~ ④ (생 략) <신 설>	제32조(사용료의 징수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 니하면 그 납부기 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체 납된 사용료에 체 납일수 1일당 10 만분의 22를 적용 하여 산출한 연체 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연체금의 한 도는 체납된 사용 료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	제32조(사용료의 징수 등) ① ~ ④ (개정안 과 같음) ⑤ ----- ----- ----- ----- ----- ----- ----- ----- 「은 행법」 제2조에 따 른 은행의 연체이 자율 등을 고려하 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금을 일단위로 징수----- ----- ----- -----

<u><신 설></u>	<u>으로 정한다.</u> ⑥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 니하면 기간을 정 하여 독촉하고, 그 지정된 기간에 사 용료 및 제5항에 따른 연체금을 내 지 아니하면 국토 교통부장관의 승인 을 받아 국세 강제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 ----- -----. ⑥ (개정안과 같음)
---------------------------	---	--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항시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하면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의 연체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금을 일단위로 징수한다. 이 경우 연체금의 한도는 체납된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고, 그 지정된 기간에 사용료 및 제5항에 따른 연체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제2조(사용료의 징수 등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체납된 사용료 및 연체금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2조(사용료의 징수 등) ① ~ ④ (생 략) <u><신 설></u>	제32조(사용료의 징수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u>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받 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사 용료를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 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하면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 부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 의 연체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연체금을 일단위로 징수한 다. 이 경우 연체금의 한도는 채납된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⑥ <u>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받 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사 용료를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 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고, 그 지 정된 기간에 사용료 및 제5항 에 따른 연체금을 내지 아니하</u>
<u><신 설></u>	

	<u>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u> <u>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u> <u>라 징수할 수 있다.</u>
--	--